

# 中國 古代 朝貢의 實體와 性格

李 春 植\*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漢代의 朝貢과 國際關係 |
| II. 周代 朝貢制度의  실제 | 1. 諸侯王·列侯의 朝貢    |
| III. 춘추시대의 國際關係  | 2. 주변 君長 大人의 朝貢  |
| 1. 會盟과 國際公法      | V. 중국 고대 朝貢의 性格  |
| 2. 列國간의 朝貢과 國際關係 | VI. 맺는말          |

## I. 머리말

1840년에 발발한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淸朝는 영국과 南京條約을 체결하였는데 이 남경조약은 중국근대사에 있어서 비상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위요한 朝貢制度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남경조약은 더욱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남경조약을 통해 과거에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전통적으로 고수 유지하여 왔던 차등적 국제관계에 기반을 둔 朝貢制度(the Tributary System)에서 각국간의 평등원칙에 입각한 條約關係(the Treaty System)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sup>1)</sup>

\* 史學科 教授 : 본 논문은 원래 韓國史研究會주관의 《古代의 韓中關係史研究》에 기고된 논문으로 中國 古代 朝貢制度의 實體와 性格에 대한 序論的 敘述을 前提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전반 부분은 필자가 발표한 몇 편의 기존 논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밝힙니다.

1) John K. Fairbank Su-yu, "On the Ching Tributary System," *Hanw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V (1964).

따라서 1842년 남경조약 체결 이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조공제도에 기반을 둔 朝貢關係였다. 이 朝貢關係는 中國天子를 중심한 宗主宗屬의 관계로 중국 주변국이 중국천자에 대한 「遣使獻方物」「奉表稱臣」의 朝觀之禮를 행하면 중국의 천자는 「除授」「封冊」 등의 分封 또는 官職을 수여하여 중국의 外藩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중국천자를 중심한 宗主宗屬의 차등적 국제질서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차등적 국제관계는 적어도 중국인의 안목에는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독립국이 없었던 사실을 의미한다.<sup>2)</sup>

그러나 장구히 시행되어 온 조공제도는 中原일대의 정치·군사·세력의 변동과 정세변화 그리고 주변국의 제반사정과 입장에 따라 조공의 시행과 성격이 수시로 변하고 그 운용도 정치 군사 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의 입장과 목적에서 다양하게 운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광활하고 비옥한 농경지대를 포함하고 고도의 선진문명을 형성했던 中原일대는 긴 역사의 전개과정에 수 많은 민족이 離合集散하고 榮枯盛衰했던 각종장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과정에서 漢민족이 정치 군사적으로 주도권을 장구히 장악했던 것도 아니었고 수 많은 주변민족이 증원을 지배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전개 과정에서 朝貢을 매개로 형성된 차등적 국제질서와 그 정점이었던 宗周國의 위치도 반드시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朝貢은 중국의 王化 德治에 감복한 주변민족의 자발적인 來朝의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화적인 관념의 소산이며 동시에 주변민족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 입장과 사정에 대한 고려는 배제된 것이다. 그러므로 朝貢制度 및 그 질서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중국 뿐만 아니라 주변민족을 포함한 범 동아시아적 입장과 사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대개 이같은 시각에서 西周 시대에 형성된 朝貢制度의 실체를

2) 劉永南, 《中國近代外交史》, 世界書局, 台北, p.9.

구명하여 그 기본적 성격을 밝히고 또한 春秋戰國時代 및 秦漢時代를 통하여 그 성격의 변모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周代 朝貢制度的 實體

기원전 1111년 경에 周 왕조를 건국한 周族은 원래 陝西 方畵의 渭水와 汾水 유역에서 농경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文王 때에 이르러 점차로 세력이 흥기하여 주변의 수 많은 민족을 정복하거나 회유하여 대세력을 형성하고 점차로 殷을 위협하였다. 그 후에 文王의 아들 武王 시에는 殷의 동방원정의 여폐를 틈 타 황하를 건너 동방으로 진출하고 牧野에서 殷軍을 격멸하여 殷王朝를 멸망시키고 鎬京에 도읍을 정하여 周王朝를 건국하였다.

그러나 殷王朝를 타도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국한 周王朝의 당면된 과제는 그 어려움이 한 둘이 아니었다. 첫째로 정복자인 周族은 피정복자인 殷族에 비하여 그 문화적 수준이 훨씬 낙후되었으며 수에 있어서도 열세하였다. 또한 주변에는 수 많은 토착씨족이 周王朝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동맹씨족은 보상을 바라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武王의 홀연한 사망은 殷遺民에게 반란을 야기할 좋은 구실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주왕조가 점령한 정복지는 그야말로 광대하였으며 준험한 산맥과 高山 長江 大河 오지와 늪 그리고 깊은 삼림으로 되었으며 이를 관통하는 도로의 설비도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욱 곤란하였던 것은 주왕조는 씨족국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광대한 영토와 백성을 통치해 본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이 같은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주왕조는 殷유민의 반란을 진압하고 또 殷族을 각지로 분산 배치하여 殷勢力의 완전복멸을 행하였다. 연후에 새롭고 다양한 통치제도와 통치기술을 강구하여 周왕조 개국의 깃들을 구축하였는데 이 같은 통치제도와 통치기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면서 중요했던 것은 王朝祚命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

치제도의 확립이었는데 이것이 西周시대의 宗法 封建제도의 창안이었다.

먼저 封建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封」과 「建」의 字意를 살펴보면 주대의 靑銅文에는 한손 또는 두 손으로 한 그루의 나무를 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의미는 城邑 간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수 또는 城邑 그 자체를 의미하였으며<sup>3)</sup> 그 뜻은 「세운다」는 의미였다. 또 「建」의 字意를 보면 「建」은 易經과 春秋左傳에서 보이는데 역시 「세운다」는 의미였다.<sup>4)</sup> 그리고 「封建」이란 용어도 春秋左傳에서 산견되는데<sup>5)</sup> 역시 그 뜻은 「封」 또는 「建」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제도로써 봉건제도가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殷 말기로 추측되며 아마 周族도 왕조 건국 이전에는 봉건제도를 부분적으로 구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6)</sup> 그러나 봉건제도가 하나의 왕조 지배체제의 근간으로 전 영토에 실시되었던 것은 서주시대였으며 그 전면적 실시는 殷을 멸한 武王과 그리고 武王 사후에 成王을 보좌하여 서주의 國基를 구축한 周公에 의해 조직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서주시대에 실시된 봉건제도는 주왕실의 자제 및 원근의 친척을 포함한 주왕실의 일족과 주왕실에 협조한 諸氏族들을 전국의 전략적 요충지에 분봉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周一族의 분봉과정을 살펴보면 殷을 멸한 후에 武王은 殷 紂王의 아들인 武庚을 宋에 봉하여 그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武王의 아우인 管叔 蔡叔 霍叔을 분봉 배치하여 殷故地와 武庚을 감시토록 하였는데 이것이 三監이었다.<sup>7)</sup> 이후에 武王이 죽고 나이 어린 成王이 즉위하자 周公이 成王의 섭정이 되어 정치를 관장하였는데 武庚祿父는 武王의 早死와 管

3) 郭沫若考, 《兩周金文辭大系考釋》, 東京, 1935, 127a, 135a.

4) 《周易注疏及補正》, 世界書局, 台北, 2: 12, 《左傳注疏及補正》 I. 52: 8a.

5) 《左傳注疏及補正》, 世界書局, 台北, 15: 28a.

6) 齊思和, 《西周地理考》, 《燕京學報》, 第三十期, (1946), p. 96.

7) 《史記》〈周本紀〉, p. 126.

叔 蔡叔 등의 周公에 대한 불만 불평 등을 이용하여 동방의 殷族과 兗 魯를 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으로 아직 國基가 공고치 않았던 주왕실은 크게 당황하였으나 노련한 周公이 원정대를 이끌고 東征을 직접 지휘하였으므로 3년 만에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 東征의 결과로 주왕조의 통치영역은 황하유역은 물론이고 산둥반도를 포함한 동부의 해안지방까지 확대되었다. 이같이 대규모의 반란을 진압하고 동시에 영토를 대폭적으로 확장한 周公은 武王의 뒤를 이어 주왕실의 일족과 공신들을 대대적으로 전국 각지의 전략적 요충지에 諸侯로 분봉 배치하였다. 이 당시에 분봉된 제후들의 출신과 성분을 살펴보면 文王의 자손은 16명 분봉되었는데 그 분봉지는 郟, 鄆, 霍, 郟, 管, 毛, 肅, 滕, 蔡, 曹, 東, 豳, 魏, 吳, 鄭, 原, 雍이었다. 다음에 武王의 자손인 4명은 晉, 韓, 廡, 邶에 분봉되었고 周公의 자손 6명은 祭, 蔣, 凡, 邢, 魯, 邠에 제각기 제후로 임명되었으며<sup>8)</sup> 이 외에도 주왕실의 일족이 많이 분봉되었다. 이 같이 분봉된 제후가 71개국이었다고 荀子는 진하고 있다.<sup>9)</sup>

한편으로 이 같이 분봉된 제후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후국은 唐, 衛, 魯, 齊 등이었다. 이 중에서 衛는 은왕실의 자손인 微子가 통치하는 宋 옆에 위치했는데 그 목적은 宋에 대한 정치 군사적 감시였다. 唐은 太原에 봉해졌는데 분봉의 목적은 서변에 준동하고 있던 西夷에 대한 방어였다. 呂尙이 분봉된 齊는 동방의 산둥지역에서 東夷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었으며 周公이 분봉된 魯는 東夷 및 은유민 반란시에 가장 주력을 이루었던 奄 지역을 감시 통치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이 周왕실은 전국 주요지역에 일족 및 공신들을 분봉 배치하여 외부의 위협을 제거하였으나 다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들 제후의 분봉 지역이 모두 황하연변을 중심으로 동방지역에 치우쳐 있어 서북변인 鎬京에서 제후들

8) 《左傳注疏及補正》, 15 : 28.

9) 《荀子集解》, 世界書局, 北台, 1962, 4 : 73.

을 통치 제어하기가 불편하였다.

그러므로 周公은 아우인 召公을 시켜 동방의 洛水 부근에 洛邑을 건설토록 하였다. 洛邑이 완성되자 周公 자신이 이주하여 洛邑을 정치 군사적 중심지로 삼았다. 이에 따라서 周왕실은 동방의 제후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일층 강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周왕실은 전국의 전략적 요충지에 일족 및 공신들을 분봉 배치하고 또 정치 군사적 도시인 洛邑을 동방에 건설하므로써 외부의 침입과 위협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한 수 많은 제후들을 周왕실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같은 제후 통치책을 위요하고 周왕실은 이념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통치책을 고안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朝貢制度였다.

먼저 朝貢制度에서 「朝」와 「貢」을 분리하여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周禮》春官宗伯에

「以賓禮親邦國，春見曰朝，夏見曰宗，秋見曰覲，冬見曰遇，時見曰會，段見曰同」<sup>10)</sup>

《禮記》曲禮에는

「天子當位而立，諸侯北面見天子，曰朝，天子當宇而立，諸公東面，諸侯西面，曰朝」<sup>11)</sup>

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春秋公羊傳》에는

「諸侯來曰朝，大夫來曰聘」<sup>12)</sup>

라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기술에 의하면 「朝」에 대한 기록은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의미는 周의 봉건제도 내에서 제후가 일정기간

10) 《周禮注疏》，18：7b.

11) 《禮記》，5：3a.

12) 《春秋公羊傳》，7：4a

을 두고 직접 周天子을 배알했던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周禮》와 《禮記》 등에 관한 사료의 신빙성 문제이다. 《周禮》와 《禮記》는 기원전 1세기 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내용은 서주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서주 시대를 찬미했던 후대 理想主義者들에 의하여 서술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sup>13)</sup>

그러므로 《周禮》와 《禮記》 중의 사실은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사료에 의해 비교 검토 되어야 한다. 《詩經》은 이런 점에서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는데 《詩經》에 의하면

「君子來朝」<sup>14)</sup>

의 기재가 있다. 正義 註에 의하면 「君子」는 제후들을 의미하고 「來朝」는 이들 제후들의 周天子에 대한 朝觀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詩經 小 雅編에는 周天子에게 朝觀하러 온 제후들의 모습과 행동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상의 기록들을 검토해 볼 때에 서주 시대에 제후의 周天子에 대한 朝觀은 행해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貢」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면 《尚書》周書에

「惟克商 遂通道于九夷八蠻」<sup>15)</sup>

라 하고 《周禮》秋官司寇下에는

「小行人 掌邦國賓客之禮……領諸侯入貢 秋獻功」<sup>16)</sup>

의 기록이 있다. 그리고 그 註에는 「貢六服所貴也」라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상에 의해 「貢」의 의미를 찾아보면 「貢」은 제후가 周天子 朝觀시

13) H. G. Creel, *The Origins of Statecraft in China*,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p. 479~80.

14) 台北藝文印書館. Bernhard Karlgren 역, *The Book of Odes*, p. 175.

15) 《尚書》, 13 : 182a.

16) 《周禮注疏》, 37 : 13b.

에 증명했던 예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貢」에 관한 기록은 이 외에도 《周禮》와 《春秋左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周禮》에 나타난 「貢」에 대한 사실을 간추려 보면

「…侯服…其貢禮物…甸服…其貢犧牲…男服…其貢器物…采服…其貢服物…衛服…其貢林物…要服…其貢貨物」<sup>17)</sup>

이상의 기록은 六服이 모두 周天子에게 제각기 독특한 물산을 貢物로 증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尚書》禹貢編에도 九州에서 토산물을 貢物로 주천자에게 증명하였다는 비슷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周禮는 사료적 신빙성이 약하고 尚書의 禹貢編도 후대의 위작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周禮나 尚書 중의 六服과 九州說도 신빙성이 없는 후대의 조작이며 따라서 貢에 관한 기록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좀더 신빙성이 있는 사료로서 貢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春秋左傳》이다. 《春秋左傳》僖公 四年條에 의하면

「春齊位 以諸侯之師侵蔡 蔡遺遂伐楚 楚子使與師長曰 君處北海 寡人處南海 唯是風馬牛不相及也……何故, 管仲對曰 昔召康公命我先君 大公曰 五侯九伯 女實征之 以來夾輔周室 賜我先君履 東至海 西至于河 南至穆陸 北至于無棣 爾貢包茅不入 王祭不共, 無以縮酒 寡人是徵 昭王南征而不復 寡人是問 對曰貢之不入 寡君之罪也 貢不共給」<sup>18)</sup>

이상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춘추초기에 齊 桓公이 패권장악을 위요하고 남방의 강국 楚와 대결했을 때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 당시 齊의 재상 管仲은 동맹국 宋·陳·鄭·許·曹·衛 등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楚의 동맹국 蔡를 정벌하고 이어서 楚를 침입하였는데 이같은 침입에 직면한 楚는 사신을 보내어 침공의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 管仲은 대답하기를 楚王이 周왕실의 제사에 쓰이는 包茅를 공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周왕실에서는 제사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응징

17) 《周禮注疏》, 37 : 11a.

18) 《春秋左傳》正義, 12 : 6a~7a.

하기 위해서 왔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楚 사자가 包茅을 공납하지 않았던 것은 我君의 잘못이었다고 인정을 하였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周왕실에 대한 包茅의 공납 여부로 대결된 齊·楚 양국의 논란 속에서 적어도 서주 시대에 제후국은 어떤 특정의 물산을 공물로 공납했음을 엿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주 시대의 제후의 공납에 대한 사실은 또 제후간의 다른 논쟁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춘추시대의 소국 鄭國은 中原에 위치한 국가였으나 晉과 楚의 양대국에 개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침략을 받아왔고 끊임없는 가림주구에 시달려 왔다. 이같은 난국에 박학다식하고 현실적인 子產이 鄭國의 재상이 되었는데 그는 우선 안으로는 농지개혁을 추진하여 국가의 稅收을 높이고 밖으로는 교묘한 외교정책을 구사하여 晉·楚 양대국의 정치 군사적 압력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대국에 대한 막대한 貢納을 경감하는데 전력을 기우렸다. 그러므로 子產은 국제회의에서 그의 해박한 지식을 구사하여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하였다.

「昔天子班貢 輕重以列 列尊貢重 周之制也」<sup>19)</sup>

이상과 같은 子產의 연설에 의하면 서주 시대에는 周天子에 대해서 제후는 각자의 지위에 따라 貢物을 공납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어떠한 貢物이 헌납되었는가를 살펴보자. 《春秋左傳》桓公年條에 의하면

「春 天王使家父來求車 非禮也 諸侯不貢車服 天子不私求財」<sup>20)</sup>

의 기록이 있는데 上文은 西周 시대에 제후는 車服 등을 공납하지 않았고 周天子 역시 돈 또는 값나가는 물건은 요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19) 同上. 46: 9b~10a.

20) 《春秋左傳》, 7: 11a.

이 같은 사실은 적어도 제후의 周天子에 대한 貢物은 지방의 토산품 아니면 희귀품으로 한정되었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볼 때에 西周 시대의 제후는 周天子에 대해 朝覲를 행했고 朝覲시에는 그 지역의 토산품 또는 희귀품을 예물로 증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天子와 諸侯 간의 朝貢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자. 朝覲의 목적에 대해 《春秋左傳》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昔諸侯朝正於王」<sup>21)</sup>

라 하고 그 註에 「朝而受正教也」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제후가 周天子에게 朝覲를 행했을 때에 周天子로부터 제후국의 施政에 대한 지침을 받았던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朝覲이 끝나면 周天子는 큰 잔치를 베풀어 제후의 노고를 치사하고 위로하였는데 이같은 君臣간의 상면과 연회는 상호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결속을 강화 하였으며 또한 상호간의 공동운명의식을 공고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君臣간의 이같은 친목돈독과 결속강화 그리고 공동운명의식을 강조하는

「王宴樂之 于是賦湛露 則天子當陽諸侯用命」<sup>22)</sup>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볼 때에 周天子는 일정기간의 朝覲를 통해 제후들을 상면하고 그들의 述職을 받으며 동시에 上下의 의견을 소통하고 또 성대한 환대를 통해 君臣 상호간의 친목과 결속을 강화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天子 諸侯간의 朝覲 述職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禮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聘覲之禮廢 則君臣之位失 諸侯之行惡 而倍畔侵略之敗起矣」<sup>23)</sup>

21) 《春秋左傳正義》，18：11b.

22) 君臣상의 相面과 宴會의 장면과 宴會의 장면에서 좀더 자세한 기록은 *The Book of Odes*, p. 254를 참조.

23) 《禮記注疏》，50：3b. 《左傳》，莊公 23年.

《左傳》莊公 23年條에는

「朝以正班爵之義，節長幼之序 征伐以討其不然」

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일 朝覲之禮가 폐지되면 君臣之位과 상실되고 제후의 行惡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禮記는 다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朝覲之禮 所以明君臣之禮」<sup>24)</sup>

이것은 朝覲의 목적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제후의 周天子에 대한 臣禮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후가 周天子에 행했던 朝覲과 貢納은 제후가 周天子에 대해 君臣之禮를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臣禮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본적 臣禮였던 朝覲을 불이행했던 제후는 周天子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孟子》에 의하면

「諸侯……一朝則貶其爵 再不朝 則削其地 三不朝 則六師移之」<sup>25)</sup>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후가 周天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제후가 朝覲을 한번 불이행하면 班爵이 강등 당하고 두번 불이행 하면 영토의 일부를 삭감 당하였다. 그리고 세번 불이행하면 周天子로부터 무력적 征討을 받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孟子에 의하면 제후의 周天子에 대한 朝覲之禮의 履行은 의무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찰에 의하여 볼 때에 서주 시대에 제후의 周天子에 대한 朝覲之禮의 履行은 君臣之義를 밝히는 제후의 기본적 臣禮였으며 이것은 의무적으로 강행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4) 《禮記注疏》，50：3a.

25) 《孟子》，12下：218.

### Ⅲ. 春秋時代의 國際關係

#### 1. 會盟과 國際公法

춘추전국시대(B.C. 770~256)의 개막은 西周의 宗法 封建制度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西周왕조 지배체제의 근간이었던 宗法 封建制度는 혈연적 유대를 그 기반으로 강고히 결속되었으나 장구한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안에 내포되었던 여러 모순과 취약점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周왕실이 中原으로 진출하여 殷을 타도하고 광대한 피정복지에 周왕실의 자제 및 功臣들을 분봉 배치하여 周王朝을 건설하였을 때에는 개국 초기의 당면과제였던 殷族 및 주변씨족의 통치 지배에는 적어도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었으나 내부적인 실제정치 운용면에서는 철저히 못하였다. 즉 周왕실은 제후 분봉시에 周왕실에 대한 有功如何, 親疏如何에 따라 봉지를 분배하여 藩屏으로 하였으나 제후국의 내정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의 권한이 없었다. 그러므로 각 제후들에게 분봉된 토지는 이후 제후 자손들에게 세습되어 장구한 시일의 경과와 더불어 제후의 자주영역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또 각지에 분봉된 제후는 개국 초기에는 대개 周왕실의 근친으로 宗法秩序에 의해 강력히 결속되었으나 장구한 시일이 지나고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 유대가 해이되고 그 결과로 周왕실과 제후 및 제후 간의 親屬關係의 疏遠과 同族意識의 弱化를 초래하였다. 이와 동시에 각 제후국의 내부에는 제후 일가를 중심한 씨족집단이 역시 장구한 시일에 걸친 공동생활과 조상숭배를 통해 씨족 결속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지배씨족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 위에 각 제후국의 자연조건과 환경은 서로 상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같은 결과로 각 제후국은 周왕실과는 점차

유리 이탈 되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중에서 周왕실과 무력적으로 항거할 수 있는 국력을 축적한 제후국이 출현하였는데 이것이 周平王의 東遷으로 표면화 된 春秋戰國時代의 개막이었다.

춘추시대의 특징은 한 마디로 말해서 列國만의 대립 항쟁과 상호공벌 병탐의 약육강식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춘추초기에 列國의 수를 보면 180여 국으로 추정되는데 약 300년이 지난 춘추말기에는 13개국으로 줄어 들었고 전국 시대에는 다시 7개국으로 축소되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춘추전국시대에 列國간의 공벌 병탐이 얼마나 극심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공벌 병탐의 와중에서 自國爲主의 현실적 국가이익과 세력신장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에 대국은 「尊王攘夷」의 명분을 내걸고 霸權掌握을 위요하고 격렬한 爭霸戰을 야기하였고 약소국은 대국의 노골적인 권력정치의 자행과 간단없는 침탈과 공벌 속에 國命保存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이같은 와중에서 각국은 안으로는 부국강병책의 추진과 군주권 확립을 위해 수 많은 개혁과 쇄신을 행하고 밖으로는 세력신장과 국리추구에 몰두하였는데 이같은 과정에 각국은 독립 주권 영토 국가어로 변모 발전하였 갔다.

당시 列國의 국가적 성격을 구명해 보면 《左傳》에

「…華元曰・過我而假道 鄙我也 鄙我亡也 殺其使者 必伐我 伐我亦亡也 一也…九月楚子圍宋」<sup>26)</sup>

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국 宋이 자주권 확립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춘추시대에는 일국의 사신이 타국을 통과할 때에는 사전에 통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대국 楚의 사신이 宋의 통행허가를 받지 않고 宋의 영토를 통과하므로 당시 宋의 재상 華元은 楚사신이 宋의 통행 허가 없이 宋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은 宋을 업신여긴

26) 《春秋左傳》，正義，24：11a.

것이다. 그렇다고 楚 사신을 사형에 처하면 楚가 침입을 할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지 宋은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내 楚사신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楚의 대대적인 침입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약소국 宋재상 華元은 통행허가가 없는 楚 사신을 통과시키면 주권국가로서 宋은 멸망한 것이고 그렇다고 사형에 처하면 楚의 침입으로 역시 宋이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宋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楚의 침입을 예견 하면서도 楚 사신을 사형에 처하였는데 이같은 사실은 당시의 약소국들이 대국의 무력적 위협과 침입의 위협 속에서도 자국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얼마나 단호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약소국은 자주권 수호에 단호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국의 내정간섭을 또한 적극적으로 배제하였다. 《左傳》에 의하면

「若寡君之二三臣 其卽世考 晉大夫而專 制其位 是晉之縣鄙也」<sup>27)</sup>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약소국 鄭이 그 대신을 임명하는데 대국 晉이 개입하였다. 당시 鄭은 晉 楚 간에 개제되어 남북으로부터 정치적 압력과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霸國이었던 晉이 鄭의 대신 임명에 간섭과 압력을 가하자 鄭재상 子產이 鄭國의 재상 임명은 鄭의 대신이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鄭은 晉의 縣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당시의 列國은 모두 영토국가였으며 한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았다. 《史記》에 의하면

「楚邊邑 卑梁氏之處女與吳邊邑之女爭桑 二女家怒相滅 兩國邊邑長聞之 怒而相攻，滅吳之邊邑，吳王怒，故遂伐楚 取兩都而去」<sup>28)</sup>

이상의 내용은 吳 楚의 兩國이 양국 국경에서 있는 한 그루의 뽕나무 소유를 위요하고 대병력을 동원하여 출동하였던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27) 同上, 48 : 13b.

28) 《史記》, 31 : 1462.

이같은 사실은 각국이 영토에 대해서는 무력대결까지 감행하면서 존보의 양보도 없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춘추전국시대의 列國은 독립 주권 영토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국제관계는 이 같은 주권 독립 영토국가로 구성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춘추전국시대는 대립 항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대국은 霸權장악을 위해 그리고 소국은 국명보존을 위해 서로 제휴하고 동맹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각국은 이 같은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과 연합을 수시로 결성하고 또 해체하였는데 춘추전국시대에는 이 같은 동맹 또는 연합을 會盟이라고 하였다. 이 會盟은 晉 楚와 같은 대국과 다수의 약소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같은 대국을 盟主, 그리고 약소국을 盟屬이라고 불렀다. 會盟이 개최되면 盟主가 희생물인 소의 左耳를 베어 그 피로서 盟書(조약문)을 쓰고 그 피를 마시거나 입술에 발랐으며 거기에 참석한 제후들도 이를 반복하였다. 연후에 盟主가 天地神明에게 낭독하여 서약하고 참석한 諸侯들이 모두 나눠 가졌다. 다음에 盟書의 일부를 犧牲牛와 함께 땅에 묻었는데 이것이 會盟의 결성이었다. 이 會盟의 결성에 의해 동맹이 형성되고 동맹에 가입한 각국은 盟書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이같은 會盟의 결성과 조약 체결을 위요하고 다각적인 접촉과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같은 현상으로 춘추전국시대에는 많은 국제회합과 특유의 외교관이 출현하였다.

먼저 국제회의가 개최되면 각국의 제후는 奏 孝公·曹 平公·鄭 伯·許 男·蔡 侯등과 같은 「公」「侯」「伯」「子」「男」의 공식 명칭이 있었으나 모두 「君」으로 호칭되었으며<sup>29)</sup> 국력의 강약에 관계없이 대등하였다. 그리고 이 국제회의에서 체결된 조약은 모두 상호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쌍무적이었다. 그리고 어느 국가도 조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을 이행하지

29) 春秋戰國 시대의 國際會議에서 각국의 君主는 영토의 크기 국력의 강약에 관계없이 모두 「君」으로 호칭되었다. 《春秋左傳正義》, 23: 75~8a 참조.

나 또 강요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춘추전국시대의 국제회의에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국력에 관계없이 상호 대등하였으며 각국의 주권이 동등하게 인정되었다.<sup>30)</sup> 그리고 체결된 조약상의 규정에 의해 각국의 권리와 의무가 달랐을 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국제회의의 주선과 상호협상 및 의사전달을 위해 이 시대 특유의 외교관이 출현하고 외교적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行人」 「使人」 「聘」 「朝」 등을 들 수 있다. 「行人」 「使人」은 대개 관직이 높은 대신 중에서 선발되었는데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군주간의 회합을 주선하는 등의 특수 임무를 띠고 상대국에 특파되었던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외교적 특권이 주어졌다. 「聘」은 일종의 특사 파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聘」은 외교적 방문과 의례적 방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儀禮的訪問은 군주의 즉위, 태자의 결혼 등의 慶弔事에 친선을 위해 선물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었고 외교적 방문은 범법자의 송환, 흉년, 가뭄 등의 국내문제에 원조를 청하는 것, 또는 타국과의 평화협상 등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 친선국에 파견하는 것이다.<sup>31)</sup> 그리고 「朝」는 일국의 군주가 타국의 군주를 직접 방문, 양국의 친선과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이 「朝」는 친선과 우의에 대한 최대의 표시였다. 그러나 춘추시대에 각국간에 행해진 「朝」는 친선도모와 우의 이상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주권, 영토, 독립국가로 구성된 春秋戰國時代의 국제사회에는 「會」와 「盟」같은 국제회합과 동맹이 자주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국제회합의 주선과 동맹결성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위해 「行人」 「使人」과 같은 외교관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각국간의 국제회의에서는 국력의 강약에 관계없이 그 주권이 대등하였으며 이 국제회의에서

30) James Legge, trans., *The Chún Tséw; with the Tso-chuans Pt. I.* p. 311.

31) Roswell S. Britton, "Chinese Interstate Intercourse Before 700B.C.,"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 (January 1935, p. 62). 또한 張王法, 《先秦時代的傳播活動及其對文化政治的影響》(台北, 1966), pp. 148~149 참조.

제결된 조약은 쌍무적이었으며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도 강요하거나 수행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이같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특정국가에 친선을 도모하고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朝聘之禮를 상호 교환하였는데 이 중에서 일국의 군주가 타국의 군주를 직접 방문하였던 「朝」를 약육강식의 시대였던 춘추전국시대의 국제사회 속에서 다시 고찰해 보자.

## 2. 列國 간의 朝貢과 國際關係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춘추전국시대의 각국은 격렬한 爭霸戰을 야기하였고 이 와중에서 각국은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라 同盟을 결성하고 상호 항쟁하였는데 盟主인 대국은 약소의 동맹국을 정치 군사적으로 원조 보호 하였으며 이에 대해 약소의 동맹국은 정치 군사상의 의무와 부담을 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盟主의 출병시에 공동출병과 정기적인 貢賦부담 등이었다. 그러나 會盟를 통한 盟主와 약소국의 관계는 자발적인 의사와 어떤 善隣意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霸權 장악을 위요하고 야기되었던 대국간의 충돌 및 약소국의 國命保存을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약소국은 필연적으로 盟主의 정치 군사적 간섭과 압박 및 경제적 부담을 강요 당하였다. 당시 대국 晉이 약소의 동맹국에 대한 貢賦誅求를 보면

「魯之於晉也 職責不貳 王之好時至 公卿大夫 相斷於朝 史不絕書 對無處月 如是司矣 何必瘠魯 以肥杞」<sup>32)</sup>

의 기록이 있는게 이것은 魯가 霸主 晉에게 매년 公卿大夫를 파견하고 또 貢物을 보내지 않았던 해가 없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 《左傳》襄公 24年 條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32) 《春秋左傳正義》，39：4b.

「二月鄭伯如晉 子產寓書於子西。以告宣子曰 子爲晉國 四隣諸侯 不聞令德 而聞重幣…… 夫諸侯賄 聚於公室 則諸侯貳 若吾子賴之 則晉國貳 諸侯貳則晉國壤乃…… 輕幣也」<sup>33)</sup>

이것은 霸國 晉에서 范宣子가 執政官이 되면서 약소동맹국에 대한 貢賦徵發이 더욱 심해지자 이에 견디지 못한 鄭國은 霸主 晉에게 서한을 보내 晉의 지나친 貢賦誅求를 지적하고 그의 輕減을 요구하여 성공하였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晉과 霸權을 겨루고 있던 남방의 楚國의 경우를 보면 당시 陳蔡 등이 楚의 동맹국이었는데 《左傳》襄公 20年條에

「楚人使蔡無常」<sup>34)</sup>

라 하고 《左傳》襄公 31年條에

「小幣邑福小 分於大國 誅求無時 是以不敢寧居 悉索敵賦」<sup>35)</sup>

《左傳》定公 15年條에는

「胡子豹 又事楚 曰存之有命 事楚何爲多取費焉」<sup>36)</sup>

의 사실이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楚 역시 晉 못지 않게 약소동맹국에 대한 貢賦誅求가 가혹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적으로 당시 약소국은 대국의 이같은 지나친 貢賦徵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파국에 직면하였으며 단일대국의 貢賦要求을 불응하였을 때에는 대국의 군사적 압력 내지 침입이 있었다.

그러나 약소국의 대국에 대한 부담은 공동출병 및 貢賦부담에만 있었

33) 同上, 35 : 13a.

34) 同上, 34 : 5b.

35) 同上, 40 : 27b.

36) 同上, 56 : 10b.

던 것이 아니었다. 대국은 약소동맹국에 대해 공동출병과 貢賦要求 외에 정치적 복속을 요구하였다. 《史記》鄭世家에 의하면

「二十七年夏 鄭簡公朝晉 多畏楚靈王之強又朝楚」<sup>37)</sup>

의 기사가 있다. 이것은 남북으로 晉 楚의 대국 사이에 개재되어 있던 鄭國이 당시에는 晉에 복속하고 있었는데 楚가 강성하여지자 이에 놀란 鄭伯이 楚王을 직접 방문하였던 사실을 말하고 있다. 또 《左傳》宣公 14年 條에 보며

「小國之免於大國也 聘而獻物 於定有庭實振百朝而獻功 於是容貌采章嘉淑 而有加貨」<sup>38)</sup>

라 하고 있는데 이 뜻은 약소국이 대국의 화를 면하려면 소국의 군주가 대국을 직접 방문하여 功을 세우고 요구된 이상으로 財貨를 증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左傳》襄公 22年 條에

「不朝之間 無歲不聘 無後不從 以大國政食之無常 國家羸病……」<sup>39)</sup>

의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霸主 晉이 鄭國에 貢賦을 독촉하였을 때에 鄭相 子產이 사자를 파견하여 대국의 무제한 貢賦要求로 鄭國이 파국에 직면하였다는 鄭의 국내사정을 토로한 내용인데 이 속에서 당시 鄭의 군주가 霸主 晉에 일정기간을 두고 朝覲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盟主와 약소동맹국과의 관계는 공동출병과 貢賦獻納 등으로 단순히 형성된 것만이 아니고 盟主에 대해 약소국의 朝覲之禮의 이행이 있었으며 또 강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朝覲이 없던 해에는 최소 卿大夫에 의한 聘問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이같은 약소국의 盟主에 대한 朝覲이 어떻게 이행되었는가를

37) 《史記》，42：1774.

38) 《春秋左傳正義》，24：11b~12a.

39) 《春秋左傳》，39：2a.

살펴보면 《左傳》宣公 8年 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春公如晉朝 且聽朝聘之書」<sup>40)</sup>

이것은 魯國이 당시의 霸國 晉에 가서 앞으로 晉에 대해 이행할 朝聘의 횃수를 묻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또 《左傳》宣公 8年 같은 條에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다.

「五月甲辰 會于邢國 以命朝聘之書 使諸侯之 大夫聽命」<sup>41)</sup>

이것은 晉이 邢國에서 會盟을 개최하고 여기에 참석한 약소동맹국에 대해 앞으로 霸國 晉에 행할 朝覲과 聘問의 횃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에 약소동맹국의 霸國에 대한 朝覲 聘問의 횃수는 대국에 의해 결정되고 약소국은 이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대국이 제시한대로 朝聘之禮가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左傳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國家之敗 有事而無業 事則不經 有業而無禮 經則不序 有禮而無威 序則不共……百事不終 所由傾覆也 是故明主之制 使諸侯歲聘以志業 問朝以講禮 再朝而會以示威 再會而盟以顯昭明 志業於好 講禮於等 示威於衆 昭門於祠 自古以來 末之或失也 存之道」<sup>42)</sup>

이 문장은 당시 霸國 晉이 齊 宋 衛 鄭 魯 曹 邾 滕 등의 약소동맹국과 平丘에서 會盟을 개최하였을 때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이 平丘會盟에서 齊가 霸國 晉에 朝覲之禮의 이행을 거절하였을 때에 晉相 叔向이 齊人에게 말하기를 옛부터 소국은 대국에 매년 朝覲之禮를 행하여 상호 친선과 우호를 돈독히 했으며 이를 태만히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소

40) 同上, 30 : 7b.

41) 同上, 30 : 8a.

42) 同上, 46 : 96.

국이 國命을 유지했던 방법이었다고 권유 겸 위협을 하였다. 이에 놀란 齊는 晉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굴복하였는데 이같은 叔向의 발언은 만약 소국이 朝覲之禮를 행하지 않으면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춘추시대에 각국간에 행해진 朝覲은 외면적으로는 상호의 친선과 우호를 돈독히 하는 최고의 외교적 행사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소국이 대국에 대한 복속의 표시로 행해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국의 이같은 朝覲에 대하여 대국은 여하한 답례를 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국의 朝覲之禮 이행에 대해서 대국은 卿大夫를 보내어 聘問을 행하였다. 《左傳》襄公 元年條에 의하면

「諸侯即位 小國朝之 大國聘焉 以繼好結信 謀事補闕 禮之大者也」<sup>43)</sup>

의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大國 군주의 즉위에는 소국의 군주가 즉위식에 직접 참석하였고 소국 군주의 즉위식에는 대국이 卿大夫를 보내어 聘問을 했던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은 당시 대국과 소국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소국은 군주에 의한 朝覲之禮를 행하면 대국은 소국에 대해 鄉大夫에 의한 聘問之禮를 행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춘추전국시대에 朝覲之禮의 이행은 소국에 의해 대국에 일방적으로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소국이 대국에 朝覲之禮를 이행했을 때에 그 목적과 성격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약소국은 그 주변에 대국의 세력이 대두되면 그 군주는 다액의 獻物을 준비하여 朝覲을 했고 대국은 또 이를 강요하였는데 《左傳》文公 17年條에 의하면

「寡君又朝…以蔽陳事」<sup>44)</sup>

43) 《春秋左傳》，29 : 26.

44) 《春秋左傳正義》，20 : 4b.

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국의 대국에 대한 정치적 복속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복속의 성격을 살펴보면 《春秋左傳》은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전하고 있다.

「子嬌老矣 公孫夏從寡君 以朝於君 見於嘗耐與執燭焉」<sup>45)</sup>

이것은 소국의 군주가 대국에 朝覲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국의 宗廟에 拜祭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실은 西周시대에 제후가 周天子에게 朝覲之禮를 행하고 이어서 周왕실 宗廟에 拜祭하였던 사실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당시 중국 고대사회에서는 한 씨족이 다른 씨족의 祭祀에 拜祭하면 바로 정치적 복속을 의미하였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서주시대 제후의 周왕실의 宗廟에 대한 拜祭는 바로 정치적 복속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춘추전국시대에 약소국의 대국 종묘에 대한 拜祭 역시 정치적 복속을 의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에 소국의 대국에 대한 朝覲之禮의 이행은 소국의 정치적 복속을 의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에 소국의 대국에 대한 정치적 복속이 항구적인 것은 아니었다. 소국의 대국에 대한 朝覲之禮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自國의 국가적 이해관계와 세력신장 및 국제세력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좌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左傳》襄公 9年 條에 의하면

「自今日既盟之後 鄭國而不唯晉命是聽 而或有異志者 有如此盟 公子駢趨進 曰……大口不加德音……自今日既盟之後 鄭國而不唯有禮與疆 可以比民者是從而敢有異志者 亦如之」<sup>46)</sup>

의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鄭國이 당시 대국 晉 및 그 동맹국에 포위되어 복속하였던 戲의 會盟에서 晉이 그 盟書에 鄭國이 이후 晉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異志를 품으면 罪를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鄭의 駢趨가

45) 《春秋左傳》，35：2a.

46) 《春秋左傳》，30：16a, b.

나와서 말하기를 鄭國은 鄭國의 이익에 庇護가 될 수 있는 強國을 추종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鄭國은 국제정세의 변동을 틈타 약국 許를 번번히 침입하여 自國勢力을 확장하였는데 이것은 약소 鄭國이 晉에 복속하고 있으면서도 그 복속이 自國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고 그 이해관계에 상충되면 晉에 대한 복속관계가 곧 단절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 《左傳》文公 17年 條에는

「晉侯不見鄭伯 以爲貳於楚也 而與之書 以告趙宣子曰 寡君即位三年 召蔡侯而與之事君 九月蔡侯入于敝邑以行 敝邑以侯宜多之難…… 而隨蔡侯以朝諸君 十四年七月 寡君又朝以藏陳事 十五年五月陳侯自敝邑 往朝于君 往年正月 燭之武往朝夷也 八月寡君又往朝 以陳蔡之密邇於楚 而不敢貳焉 則敝邑之故也」<sup>47)</sup>

라 하고 있는데 이것은 晉에 복속하고 있던 鄭國이 晉을 버리고 楚에 복속하였는데 다시 楚를 버리고 晉에 접근하려고 하자 이를 괴씸히 여긴 晉侯가 鄭伯과의 상면을 거부하였다. 이에 鄭國이 晉의 趙宣子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이 서신에서 鄭은 과거 수십년간 鄭國이 晉에 행한 공적과 충성을 열거하고 鄭國이 晉을 버리고 楚에 복속한 것은 鄭國의 잘못이 아니고 晉의 부덕한 소치에서 연유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左傳》宣公 11年 條에 보면

「晉楚不務德 而以爭兵 與其來者可也 晉楚無信 我焉得有信……」<sup>48)</sup>

에서 엿보이듯 대국이 相互 交侵 攻伐로 無信하는 터에 鄭國만이 有信할 필요가 없다고 공언하면서 오로지 國利와 안전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로 볼 때에 춘추전국시대의 약소국은 朝覲를 통해 대국에 복속을 하고 있으면서도 自國의 國利와 安全에 상충되면 그 복속관계를 수시로 단절했던 것이며 어떠한 특정국에

47) 《春秋左傳正義》，20：4b.

48) 《春秋左傳正義》，22：8b.

항구적으로 복속하거나 종속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춘추전국시대에 소국의 대국에 대한 朝覲之禮의 이행은 정치적 복속을 의미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정세에 따른 自國의 이해관계에서 출발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 관계는 항구적일 수 없었고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 단절할 수 있었다.

## VI. 漢代의 朝貢과 國際關係

### 1. 諸侯王 列侯의 朝貢

기원전 206년에 한고조 劉邦은 楚玉 項羽를 烏江에서 폐사시키고 漢帝國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왕조의 기반이 되는 통치제도를 수립하려고 하였을 때에 정치적으로 노련한 劉邦은 秦帝國이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 諸與件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강행된 郡縣制度의 전국적 실시에 의해 短命의 왕조로 끝나고 반면에 잠시 천하를 제패한 項羽는 이미 시대에 역행된 봉건제도로의 복귀에 의해 천하를 상실한 실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封建制度和 郡縣制度를 절충한 郡國制度를 실시하게 되었다.

한고조가 실시한 郡國制度를 보면 수도였던 長安을 중심으로 한 중앙지역은 秦의 郡縣制度를 계승하여 실시하였고 지방의 변두리 지역은 諸侯國과 侯國을 두었다. 따라서 군현제가 실시되었던 지역은 황제가 임명 파견한 관리들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諸侯國과 侯國은 諸侯王과 列侯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이들 제후왕과 열후는 개국시에 공이 컸던 공신들을 분봉한 것이었다. 한고조 시에 분봉된 열후는 同姓 異姓을 합하여 143인이었으며 제후왕은 7인이었다. 이 중에서 열후는 二十等爵制의 최상위였으며 봉지 내지 봉읍은 일개 縣정도였다. 列侯는 여기에서 징수되는 租稅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縣令 및 相을 두어 봉읍의 통치와 재정관리를

담당케 하였다. 그러나 列侯의 봉읍은 일개 縣에 불과했고 그 수입도 大縣인 경우에 일만호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열후는 자신의 무력도 소유하지 않았고 또 열후 자신도 수도인 長安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적 경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후왕은 열후에 비해서 볼 때에 근본적으로 상위하였다. 먼저 제후왕의 영지를 보면 數郡數十縣에 달하여 그 봉지가 광대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광대한 봉지를 통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통치조직을 방불케 하는 관료기구를 두었다. 제후왕의 밑에는 제후왕을 보좌하는 太傅가 있었으며 太傅 밑에는 백성들의 통치를 담당했던 內史, 군사를 통괄했던 中尉, 관리를 통솔했던 相(丞相), 감찰을 담당했던 御史大夫, 刑律을 책임맡았던 廷尉, 諸侯王室의 재정을 보살폈던 少府, 그리고 제후왕실을 보필하는 宗正 博士 大夫 등이 있었는데 이같은 관료조직은 중앙정부의 관료제도와 아주 비슷하였다. 여기에 제후왕은 자신의 방대한 무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 제후왕은 열후처럼 수도 長安에 거주하지 않았고 자신의 국도에 거주하고 長安에는 숙박소인 邸舍만 두었다. 그러므로 한 초기의 제후국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그대로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적·군사적 집단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제국에 직접적인 위협세력으로 변모 성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제국은 이같이 독립적 정치·군사적 집단인 제후국을 통제 하는데 특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렸다. 먼저 한고조는 제후왕 중에서 세력이 막강했던 趙王 趙勃, 楚王 韓信, 梁王 彭越 등의 異姓諸侯를 차례로 同姓諸侯로 대체하였다. 文帝 景帝시에는 제후왕의 병권을 거두어 중앙정부의 관할하여 두었고 제후왕의 상속법을 개정하여 제후왕의 세력을 분산시켰고 마침내는 賈誼에 의해 제시된 「衆建諸侯政策」과 晁錯에 의해 제시된 「削地政策」을 강행하여 제후왕들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그 위협을 제거시키는데 성공하였다.<sup>49)</sup>

49) 漢初期에 분봉된 諸侯國의 영토는 漢帝國 領土의 2/3에 해당되었는데 諸侯國의 이갈

이와 같이 漢 중앙정부는 독립적인 정치·군사집단이었던 제후왕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 위협을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朝貢制度였다고 할 수 있다. 《漢書》高帝本紀에 보면

「……令諸侯王 通侯常以十月朝獻」<sup>50)</sup>

의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한고조 劉邦이 제후왕과 열후에게 정기적인 朝覲의 이행을 명령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후왕과 열후의 朝覲시기는 十月로 정해졌는데 이것은 한의 正朔이 十月에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제후왕 및 열후의 漢天子에 대한 朝覲儀式은 《史記》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諸侯王朝見天子 漢法凡當見耳 始到 小入見 到正朔且 奉皮薦璧賀正月 法見後三日 爲王置酒 賜金錢財物 後二日 復入小見 辭去 凡留長安二十日 小見者, 燕見於楚門內 飲於省中 非士人所得入也……今漢之儀法 朝見賀正同者 常一王四侯俱朝見 十餘歲一至」<sup>51)</sup>

이상의 기록은 한 초기의 제후왕과 열후의 朝覲儀式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매년 제후왕 열후와의 朝覲은 一王四侯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매번의 朝覲은 4회에 걸쳐 행해졌는데 이 중에서 漢의 正朔인 正月朔일에 皮薦璧玉을 봉헌했던 法見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漢皇帝는 이같이 朝覲한 제후왕 열후들을 위해 술을 내리고 금품을 하사하는 置酒와 回賜의 답례를 하였다.<sup>52)</sup> 그리고 漢武帝시에는 置酒를 통하여 제후왕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조

은 방대한 領地를 분산시키는 것이 諸侯王 세력弱化的의 첩경이었다. 그러므로 漢王室은 賈誼가 제시한 「衆建諸侯政策」의 강행으로 각 제후국의 戶口와 領土의 크기는 크게 줄어들어 諸侯國의 세력을 분산시키는데 크게 성공하였고 또한 諸侯王의 증가는 諸侯國간의 意見不一致를 가져와 상호간의 行動統一을 어렵게 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이후 吳楚七國亂에 그대로 반영되어 亂을 진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50) 《漢書》，1下：70.

51) 《史記》，58：2090.

52) 同上，58：2090.

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같은 사실은 西周시대의 周王이 朝覲를 통하여 제후와 상면하여 제후의 施政을 논의하고 또 周天子의 선물을 하사하고 잔치를 베풀어 제후들의 노고를 위로 하면서 동시에 상호의 친선과 우호증진을 도모했던 양상과 비슷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漢文帝시에는 朝覲하는 제후에게 錢納이 의무적으로 부과되었던 것 같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후왕 열후의 朝覲시에는 皮薦璧玉을 봉헌하는 것이 慣例였는데 이 皮薦璧玉의 봉헌이 西周시대에 있었던 貢物과 같은 성질의 것이었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皮薦과 璧玉이 모두 특정지역의 토산품 아니면 희귀품이었으며 皮薦이 武帝시에는 화폐로 사용되고 있던 皮幣로 대체되었던 사실을 감안하고<sup>53)</sup> 또 한무제 이후부터는 제후왕 열후의 奉獻이 錢納으로 변화하였는데 이같은 사실은 적어도 漢 초기에 제후왕 열후의 朝覲시에는 貢物 내지는 이와 비슷한 예물 증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으며 그 예물은 서주시대에 제후가 周天子에게 증정하였던 貢物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또한 漢대의 제후왕 열후의 朝覲는 漢皇帝에 대한 알현과 예물 증정으로 끝났던 것만은 아니었다. 《續漢志》禮儀志에 의하면 文帝가 耐金律을 제정할 당시의 사정을 전하고 있는데

「令諸侯助祭貢金」<sup>54)</sup>

의 기록이 있다. 그리고 시대가 좀 더러지기는 하나 《後漢書》宗室四王三侯列傳에는

「先是平帝時 敞與崇俱朝京師 助祭明堂」<sup>55)</sup>

53) 《史記》, 30 : 142b, 30 : 1433.

54) 《續漢志》, 12 : 43.

55) 《後漢書》, 14 : 561. 이외에도 漢王室에 대한 諸侯의 朝覲 의식이 甘泉宮 明堂 泰山 등지에서 많이 행해졌는데 이를 諸地域은 모두 漢王室의 祭禮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으로 諸侯의 朝覲과 助祭는 상호 관련지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史記》, 12 : 478~481 참조).

의 기록이 있고 李賢의 註에서는 「平帝時 王莽輔政 裕祭明堂 諸位王 二十八人 列侯 百二十八 宗室子 九百餘人 徵助祭也」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은 제후왕 열후의 漢皇帝에 대한 朝覲之禮의 이행은 朝覲과 貢物 奉獻으로 끝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漢王室 祭祀의 助祭 또는 拜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漢代 제후와 열후의 朝覲는 西周시대의 제후들이 周天子에게 朝覲之禮를 행한 후에 西周王室의 宗朝에 들러 拜祭하였던 사실과 아주 유사하다.<sup>56)</sup>

또한 漢代에 있어서 제후왕 열후의 朝覲횟수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히 알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漢皇帝는 매년 一王四侯의 朝覲를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제후왕은 10여년에 1회 朝覲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제후왕 열후는 春秋로 朝覲를 행하였다는 의견도 있다.<sup>57)</sup> 한대의 자료에 나타난 사실을 살펴보면 一王四侯의 원칙이 지켜진 것 같지는 않다. 기재된 「來朝」의 기사를 살펴보면 高祖 元年(B.C. 206)부터 武帝 太初 4년(B.C. 101)까지 106년간에 모두 172회의 제후왕 來朝가 있다. 이 기록을 조사해보면 매년 평균 1.7씩 來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매년 「一王」의 원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sup>58)</sup> 또 제후왕의 朝覲시기 또는 기간도 일정치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년 來朝한 경우도 있고 수년간 來朝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후왕 열후의 朝覲횟수와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제후왕 열후의 朝覲之禮의 이행은 필수적이었던 것 같다. 그 이유로서 당시 同姓諸侯王이었던 吳王 劉鼻가 20여년간 稱病下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그 죄를 논하였다.<sup>59)</sup> 또 梁孝王은 그의 빈번한 入朝와 장기간의 長安滯留로 혹심한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제후왕 중에

56) Choon shik Lee, "The Nature & Function of the Tributary System in the Western Chou Times," 《中國學論叢(金茂輝教授華甲紀念)》, 1983, pp. 235~236.

57) 西嶋定生, 《秦漢帝國》, 中國の歴史, 講談社, 東京, 昭和 54, p. 87.

58) 金翰奎, 《古代中國的世界秩序研究》, 一潮閣, 서울, 1982, p. 127.

59) 《漢書》, 35 : 1906, 35 : 1915.

서 노쇠하거나 병이 있는 자는 不朝를 허락한 사례도 자주 발견되는데<sup>60)</sup> 이같은 사실은 漢代의 제후왕 열후의 朝覲은 그 시기와 횡수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의무적이었으며 이를 어겼을 때에는 처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漢代 제후왕 열후의 朝覲之禮의 이행은 朝覲 貢物 助祭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西周시대의 제후가 周天子에게 행했던 朝覲之禮와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의 것으로 제후가 周天子에게 君臣之義를 밝혔던 臣禮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대의 朝覲之禮의 이행은 역시 서주시대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이었으며 이를 어겼을 때에는 처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주변 君長 大人의 朝貢

개국 초기의 한제국의 대외관계는 군현제도와 봉건제도를 절충한 郡國制度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대내관계보다도 더 복잡하고 곤혹스러웠다. 한고조 劉邦이 楚王 頂羽를 물리치고 中原을 통일하였을 때에는 몽고 초원지대를 중심한 북방방의 유목민족 중에서 匈奴族을 구축으로 한 匈奴遊牧帝國이 형성되어 몽고고원을 중심으로 동으로는 東胡를 멸하고 서로는 月氏와 西域諸國을 복속시키고 다시 그 예봉을 남으로 돌이여 중국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秦時에 상실된 河南地를 회복하고 계속 남침하여 漢의 山西 陝西지방에까지 육박하였다.

이와 같이 전례없는 흉노유목제국의 위협과 압박에 직면한 漢고조 劉邦은 中原통일의 餘勢을 몰아 흉노에 대한 공격을 가했으나 도리어 山西의 平城에서 大敗를 당하고 부득불 和親을 제의하여 흉노의 예봉을 피하였다. 그 후에 흉노의 막강한 세력을 절감한 한고조 劉邦은 다시 계속되는 흉노의 남침과 약탈의 증압속에서 마침내 흉노에 대한 무력적 항쟁

60) 《漢書》, 6 : 170, 45 : 2169, 10 : 433. 44 : 2145.

을 포기하고 다시 和親을 제의하였다. 이후에 양국의 관계는 비록 흉노족의 산발적인 무력도발이 있었지만 漢武帝의 즉위까지 약 60여년간 대체로 협상과 교섭속에서 계속되었는데 이 60여년간의 양국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平城에서 한고조가 대패한 이후에 전개되었던 양족의 협상과 교섭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高祖罷平城歸……當時是冒屯兵強 控弦四十萬 數苦北邊 上患之間敬 敬曰 天下初定 士卒罷於兵革 未可 以武服之 階下誠能以嫡長公主妻單于 厚奉遺之」<sup>61)</sup>

이것은 平城에서 패배한 漢이 계속되는 흉노의 무력적 위협속에 마침내 한왕실의 공주를 흉노의 單于에게 출가시켜 흉노를 무마해보려고 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漢에서는 이같은 정책을 和親政策이라고 불렀는데 이 和親政策은<sup>62)</sup> 漢武帝의 對匈奴 적극정책이 전개될 때까지 흉노에 대한 漢의 기본정책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 양국간에 전개된 和親政策의 주요 내용과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惠帝三年 以宗室女爲公主 嫁匈奴單于」<sup>63)</sup>

라 하여 惠帝 시에는 漢宗室女를 公主로 분식시켜 單于에게 출가시켰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文帝시에 흉노측에서는 冒屯單于가 사망하고 그의 자 稽粥單于가 즉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漢은

「老上單于初交 文帝復遣宗人翁主 爲單于閼氏」<sup>64)</sup>

에서 엿보이듯 宗室女를 婚嫁시키고 景帝시에 老上單于가 사망하고 軍

61) 《新校資治通鑑注》，世界書局，台北，民國 51年，12：382.

62) 《漢書》，94上：3754.

63) 《漢書》，94：3765.

64) 《史記》，110：2898.

臣單于가 즉위하자,

「孝景帝復與匈奴和親……遣公主如故約」<sup>65)</sup>

에서 볼 수 있듯이 다시 宗室女를 單于의 閼氏로 출가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 볼 때에 漢은 高祖이래 惠帝 文帝 景帝시대까지 單于의 즉위에는 宗室女를 漢의 공주로 假飾시켜 單于의 閼氏로 婚嫁시킨 것을 알 수 있고 또 「如故約」라 한 사실을 보면 匈奴單于에 대한 漢室公主의 출가는 漢高祖가 平城에서 대패하고 흉노와 和親條約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규정되었던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漢은 이같이 宗室女를 單于에게 공주로 가식시켜 출가시켰던 외에 막대한 財貨를 봉헌하였는데

「高祖乃使劉敬 奉宗室女公主 爲單于閼氏 歲奉匈奴繒 酒米食物 各有書……」<sup>66)</sup>

라 하고 景帝시에 晁錯이 흉노 제어책을 진언하는 上奏속에

「今匈奴侮侮侵掠 至不敬也 而漢歲致金 絮采繒以奉之」<sup>67)</sup>

라 하고 있는데 이상의 사실은 당시 漢은 흉노에게 宗室女를 每 單于에게 출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년 막대한 財貨를 정기적으로 봉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漢은 수시로 흉노측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財貨를 보냈는데

「單于將伐口有功 甚苦兵事 服繡裕綺衣 繡袷長襪……黃金飾貝帶……黃金胥緹繡匹」<sup>68)</sup>

65) 《漢書》，94上：3765.

66) 《漢書》，94上：3754.

67) 同上，48：2240.

69) 《史記》，110：2896.

「孝景帝復與匈奴和親 通關市 給遺匈奴……」<sup>69)</sup>

이상의 사실은 漢이 매년 흉노에 대한 정기적인 財貨奉獻 외에 흉노의 동태와 사정의 변화 및 요구에 따라 수시로 봉헌하는 재화를 추가하고 또 關市를 열어 흉노측의 물자수급에 풍부히 응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漢의 每單于에 대한 공주 출가와 다액의 財貨奉獻에 대해 흉노측의 답례 내지 대응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오직 무력적 침입과 약탈의 증지였다. 그러나 흉노는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수시의 충동과 기분에 따라 간헐적인 침입과 약탈을 계속 자행했으며 이에 대해 한은 무력의 약세와 和親條約違背에 대한 처벌 규정의 미비로 항의 한번 제기하지 못하고 오직 歲幣증가와 隣國간의 友好만을 외교적으로 강조하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漢의 흉노에 대한 和親政策은 匈奴에 대한 漢室 공주의 출가와 매년 정기적 그리고 수시의 막대한 財貨奉獻이 전부였으며 이같은 和親政策에 대해 흉노측의 답례는 무력적 침입과 약탈의 증지였으나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漢에서는 이같은 關係를 「貨賂結和親」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또 이같은 양국의 관계를 「水平的關係」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漢과 흉노와의 관계는 흉노에 대한 漢의 일반적 굴욕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시에 동서 북으로 漢을 포위하고 막강한 무력으로 漢을 압박하고 있던 흉노에게 漢이 무력적인 항쟁을 포기하고 이상과 같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誥和親條件을 제기 수행하여 흉노의 무단한 침입과 약탈을 모면해 보려고 했던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양국의 관계는 무력의 강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양국의 관계는 「힘」을 배경으로 한 국제적 力學關係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앞장에서 고찰한 춘추진국시대

69) 『史記』, 110: 2904.

의 국제관계에서 무력이 약했던 약소국은 大國 또는 霸國에 의해 朝覲과 貢物이 강요되고 실시되었다. 그리고 《監鐵論》에는 무력적 강약에 기반한 국제관계를 서술하는 가운데에

「力多則人朝 力寡則朝於人」<sup>70)</sup>

라 하여 국제관계에서 力不足이면 入貢 臣服했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국시대 말기의 韓非子是

「敵國之君主 雖說吾義 吾不入貢而臣」<sup>72)</sup>

라 하여 당시의 국제사회에서 力不足하여 入貢하면 臣服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文帝시에 賈誼는 漢과 흉노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天下之勢方倒懸，凡天子者天下之首，何也上也 蠻夷者 天下之足也 何也下也 今匈奴嫚侮侵掠 至不敬也 爲天下患 至亡已也 而漢歲致金絮采繒以奉之 夷狄微令 是主上之操也 天子共貢 是臣下之禮也……足反居上 首顛居下 倒懸如此」<sup>73)</sup>

이와 같이 賈誼는 漢의 흉노에 대한 歲幣奉獻을 入貢 또는 納貢으로 간주하고 있고 漢과 흉노와의 관계는 上下관계, 首足관계, 君臣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漢왕조 이후에 역대 中原왕조와 교섭을 가졌던 주변 국가의 경우를 보면

「疏勒國遣使奉獻」<sup>74)</sup>

「拘彌國遣使貢獻」<sup>75)</sup>

70) 金翰圭, 前掲書, p. 199.

71) 《監鐵論》, 8 : 4.

72) 《韓非子》, 12 : 4.

73) 《漢書》, 48 : 2240.

74) 《後漢書》, 6 : 254.

75) 《後漢書》, 6 : 257.

의 사실에서 보이듯 方物을 獻納했던 것을 入貢 또는 朝貢으로 간주했는데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漢의 흉노에 대한 정기적인 歲幣奉獻은 入貢 또는 納貢의 사실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漢의 흉노에 대한 정기적인 歲幣奉獻을 入貢 또는 納貢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또 후대에 「遣使獻貢」「回賜封冊」 등의 형식을 갖춘 朝貢制度에<sup>76)</sup> 비교해 볼 때에 아직 제도적으로 미미한 점이 많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힘」을 배경으로 한 국제적 力學關係에서 무력적 강약에 의해 政治的 服屬關係을 결정하였던 사실을 상기하고 또 무력은 강하였으나 정치적 의식이 빈약하였던 흉노의 입장을 감안해 보면 漢의 흉노에 대한 정기적인 歲幣奉獻은 入貢이었고 臣服을 의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漢과 흉노와의 이같은 관계는 한무제 이후에도 계속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한무제가 漢과 흉노와의 이같은 관계를 대단히 불쾌히 여기고 文帝·景帝이래 축적되어 온 방대한 국력을 배경으로 흉노에 대한 적극공세를 취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漢과 흉노 사이에는 漠北을 중심으로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고 마침내 결정적인 전투에서 흉노가 수차 패하여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宣帝시에는 흉노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그리고 남흉노의 呼韓邪單于가 漢에 投降하였다. 이렇게 漢에 투항한 呼韓邪單于是 稱臣入朝하여 朝禮에 참석하였다.<sup>77)</sup> 따라서 漢武帝 이후의 漢과 흉노와의 관계는 武帝이전의 관계에 비교해 볼 때에 역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역전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漢과 흉노 사이의 무력적 강약이 뒤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漢의 대외관계는 흉노만으로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漢제국 건립이래 주변의 수많은 夷狄들의 入朝가 있었다. 그리고 夷狄들의 入朝 혹은 來朝가 없는 경우에는 사신을 보내어 入朝를 권유하기도 하였고 물품을 제공하여 來朝를 유인하기도 하였다.<sup>78)</sup> 그러나 당시의 동북

76) 全海宗, <漢代的 朝貢制度에 대한 一考察>《東洋史學研究》, 六輯(1973), p. 11.

77) 《漢書》, 8 : 27~272.

아시아의 정세를 살펴볼 때에 漢제국에 비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부 조직과 선진문화를 창달한 국가는 없었다. 모두 수렵경제 아니면 반농 반목의 경제상태였으며 또한 정치적으로도 분열 대립된 씨족국가 상태를 전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중에는 漢제국의 국력과 문화 발달을 모르고 대등한 관계를 주장하였다가 漢제국의 실체를 인식한 다음에 복속한 경우도 있었는데<sup>79)</sup> 이같은 문화적·무력적 차이에서 볼 때에 주변 夷狄은 漢제국에 朝貢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漢제국은 이같은 주변 夷狄의 朝貢使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漢무제시에 典屬國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후대에 大鴻廬로 변하였다.<sup>80)</sup>

당시의 주변 夷狄들의 入朝 혹은 來朝 사실을 보면

「鳥桓大人來朝」<sup>81)</sup>

「鮮卑大人內屬 朝貢」<sup>82)</sup>

「遼西鳥桓 大人赤阻等九百二十二人率衆向化 詣闕朝貢」<sup>83)</sup>

「永昌徼外遣使貢獻」<sup>84)</sup>

등의 사실을 위시해서 다수 보이는데 上文에서 보이듯 夷狄의 大人君長이 직접 來朝 朝貢한 경우도 있고 사신을 보내어 朝貢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지방의 토산물 아니면 특산물을 봉헌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에 대해서 漢은 內諸侯에게 행했던 것과 같은 置酒와 回賜를 관례적으로 행하고 귀국시에는 많은 下賜品과 더불어 印綬 혹은 璽綬를 하사하였는데<sup>85)</sup> 이 官綬와 璽綬의 수여는 이들 外夷 君長 또는

78) 《漢書》, 96上 : 3877.

79) 同上, 95 : 3848~49.

80) 《漢書》, 19上 : 734.

81) 《後漢書》, 89 : 2944.

82) 《後漢書》, 1下 : 80.

83) 《後漢書》, 90 : 2982.

84) 《後漢書》, 5 : 230.

85) 夷狄들의 來朝와 貢獻에 대한 漢王室의 置酒와 回賜는 관례적으로 행하였는데 《漢書》, 8 : 271, 《後漢書》, 90 : 2982. 그 목적은 먼 길은 온 위로의 뜻도 있었으며 또한 置酒의 기회를 통해 주변 사정의 이해와 파악 및 親睦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大人들을 漢의 外臣으로 포섭하였던 것을 의미하였다.<sup>86)</sup> 그리고 이같은 外夷 君長 大人들의 入朝 獻貢物에 대해서 《史記》와 《漢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朝覲 然後諸侯國所以臣」<sup>87)</sup>

「有尊尊敬上之心 爲制朝覲之禮」<sup>88)</sup>

「禮爲諸侯制相朝聘之禮 蓋以考禮壹德 尊事天子也」<sup>89)</sup>

따라서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에 漢대에 있어서 外夷 君長 大人들의 來朝 獻貢物은 漢제국에 服屬 臣服되었던 사실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漢제국을 중심으로 당시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돌이켜 볼 때에 漢과 흉노와의 초기관계는 漢이 흉노에게 복속하고 있었으나 양국의 무력적 강약이 역전되자 그 복속관계도 역전되어 흉노가 漢에 복속되었으며 漢제국 주변의 群小氏族과 國家는 당시의 漢에 대해 무력적 강약이 비교가 안되었기 때문에 漢에 來朝朝貢하였으며 漢의 外臣으로 포섭되어 臣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V. 중국 고대 朝貢의 성격

중국에서 秦漢제국 출현 이전의 先秦時代를 사회학적으로 분류해 보면 그 기반이 氏族社會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시각에서 殷王朝의 국가조직을 살펴보면 殷王朝는 商邑을 중심으로 개국하고 고도의 청동문화를 발전시킨 중국 최초의 정치적 통일세력권을 형성하였던 조직적인 王朝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부의 국가조직을 살펴보면 이는 당시 황하유역

수 있다. 또 많은 回賜品の 下賜는 漢의 富力을 과시하고 또 이들의 物的 慾求를 충족시켜 포섭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86) 粵原明信, 《秦漢史の研究》, 吉川弘文館, 東京, 昭和 52, p. 264.

87) 《史記》, 24 : 1229.

88) 《漢書》, 22 : 1028.

89) 同上, 80 : 3317.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씨족이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하였던 殷族을 중심하여 殷王朝를 개국하고 주변의 諸異族의 침입에 대비하였던 일종의 씨족연맹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殷王朝내부의 지배구조를 살펴 보면 이는 여러 씨족집단의 응결로서 씨족이 씨족을 지배하는 씨족적 지배방법이었다. 다시 말하면 최고통치자는 殷王이었으나 그 직접 지배권은 同系の 殷族에 한했을 뿐 타씨족에 대해서는 직접 미치지 못하고 각기의 씨족장을 통하여 간접지배를 하였을 뿐이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殷王朝의 국가조직은 씨족 또는 부족연맹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殷王은 盟主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90)</sup>

또한 西周의 국가조직과 지배방식도 크게 보아서 殷王朝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西周시대의 지배체제는 宗法的 封建制度였는데 이 宗法的 封建制度는 宗法制度에 의해 周天子에서부터 諸侯 卿大夫에 이르기까지 누층적인 宗法秩序를 형성하여 周天子를 중심으로 강력히 결속하였으나 실제 정치 운영면에서는 역시 씨족이 씨족을 지배하는 씨족적 지배방법이었다. 다시 말하면 周왕실의 통치력은 西周의 王城 주변의 王畿로 호칭되는 지역과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에 대해서만 가능하였지 기타 지역과 백성은 그 지역의 諸侯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西周시대의 宗法的 封建制度 역시 본질적인 면에서는 殷代의 씨족적 지배방식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91)</sup>

따라서 殷周시대의 사회적 단위는 씨족이었으며 그 주거지는 邦·國·國 등의 城邑도시였다. 그리고 이들 城邑도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공동의 혈연의식 전통적 씨족결합 및 공동운명의식 등으로 강력히 결속되었으며 또한 정치·군사적 독립집단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城邑都市는 바로 하나의 城邑國家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

90) 西嶋定生, 《中國古代의 社會와 經濟》, 東京大學出版會, 東京, 1981, p. 30.

91) " ", 《秦漢帝國의 出現》, 世界の歴史 3, 筑摩書房, 東京, 1960, pp. 94-95.

고 이 城邑都市 내지 國家는 殷王室에 婚姻은 多婦에 의해 대표되는 通婚關係에 의해 殷王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시에<sup>92)</sup> 殷王을 頂點으로 한 殷왕조의 국가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말하면 殷代의 성읍도시 내지는 성읍국가의 首長 또는 대표자였던 侯伯 등은 자신의 씨족원과 성읍에 대한 지배권을 그대로 장악하면서 宗教軍事的 盟主였던 殷王에게 정치적으로 복속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정치적 복속의 표현의 방법으로 殷王室에서 내리는 祭祀를 받드는 것과 殷王에 朝貢을 행하는 것이었다.<sup>93)</sup>

또한 西周시대의 제후국도 殷대에 존속하였던 邦·邑·國에 기본하였다. 다시 말하면 西周시대의 제후국도 姬姓의 諸侯는 그 宗法制度에 의하여 周왕실과 大宗 小宗의 宗法秩序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성읍에 기반을 둔 정치 군사적 독립집단이었으며 諸侯는 이같은 성읍국가의 정치 군사적 통치자였으며 씨족적 首長이었다.<sup>94)</sup> 그리고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朝覲를 통해서 周왕실에 정치적으로 복속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殷王朝와 西周王朝의 국가조직을 고찰해 보면 내부적으로 공동의 혈연의식, 강고한 씨족의식, 그리고 공동운명의식 등으로 강력히 결속된 씨족조직을 기반으로 한 정치·군사적 독립집단이었던 성읍도시 내지는 성읍국가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殷周시대의 국가조직을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위에서 누누히 설명한 바와 같이 강고한 씨족조직과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독자적 정치 군사적 집단을 형성했던 성읍국가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시각에서 볼 때에 殷王 또는 西周王도 보다 크고 강력했던 성읍국가의 首長이었으며 정치 군사적 통치자였다. 그러므로 이들 성읍국가

92) 貝塚茂樹, 《古代殷帝國》, みすず書店, 東京, 昭和, p. 236.

93) 貝塚茂樹, 前掲書, p. 237.

94) 西嶋定生, 《秦漢帝國の出現》, 世界の歴史, 筑摩書店, 東京, 1960, p. 98.

간의 상호 지배관계는 殷王族 또는 西周王族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대한 정치적 복속의 표시는 약소의 성읍국가가 朝貢을 하고 그 지배씨족의 祭祀를 받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西周的 天子와 제후간의 정치적 관계에서 보았던 바다.

또한 춘추전국시대의 각국간의 관계도 기본적인 면에서는 씨족이 씨족을 지배했던 씨족적 지배원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춘추전국시대의 각국은 국제회의에서는 그 주권이 인정되고 또 대등하였지만 공벌병탐과 약육강식의 와중에서 대국 소국간의 무력적 강약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晉 楚와 같은 대국을 중심으로 세력권이 형성되고 會盟 개최를 통하여 약소국의 규합을 도모하였다. 여기에서 약소국은 國命保存을 위하여 또는 대국의 강요에 의하여 會盟에 참석하여 同盟관계를 형성하고 대국에 복속하였다. 그리고 그 복속의 표시는 약소국 군주의 대국에 대한 朝覲과 獻貢物이었으며 宗廟에 대한 拜祀였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춘추전국시대의 각국은 주권 영토 독립국가였다. 이것은 각국에 안으로는 종래의 씨족적 결합과 전통의식을 근간으로 형성된 지배씨족이 諸侯일가를 중심으로 지배계층의 中核을 형성하였으며 밖으로는 自國爲主의 독자적 政治運用을 시행하였던 정치 군사적 집단이었다. 그리고 晉 楚와 같은 대국 또는 霸國은 정치 군사적으로 더 강력했던 국가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춘추전국시대의 각국을 殷周시대의 성읍국가에 비교해 볼 때에 그 국가적 규모와 통치제도 그리고 지배방식은 더 발달되고 체계적이었다고 할 수 있어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강고한 씨족적 결합과 전통의식 그리고 他族지배를 불허했던 자주성과 독립성 그리고 독자적 정치 군사적 집단 등의 諸要因은 城邑都市 내지 國家的 體制 및 그 상호관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동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아래 무력이 약했던 약소국은 國命保存을 위해 대국에 정치적으로 복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복속의 표시는 약소국 군주의 朝貢과 拜

祭로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국의 입장에서 이같은 약소국의 朝貢 또는 拜祭의 형식을 통해 복속을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시의 정치 윤리 사회적 측면에서 약소국의 滅國은 지극히 어려웠던 것이었다.<sup>95)</sup> 그러므로 춘추전국시대를 통하여 併吞滅國의 현상이 빈번히 행해지면서도 각국은 霸權 장악과 會盟開催를 통해 霸主로서의 인정받기를 추구하였으며 약소국은 朝貢과 拜祭를 통해 그 霸權을 인정하고 복속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에 朝貢과 拜祭之禮의 이행은 안으로 강고한 씨족적 또는 국가적 조직과 전통의식으로 결속되고 밖으로는 정치 군사적 독립집단으로 구성된 사회속에서 무력적으로 강고한 집단에 약소의 집단이 행했던 정치적 복속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朝貢의 특성은 다음의 秦帝國의 수립에 의하여 더욱 명료해진다고 할 수 있다.

秦제국은 秦始皇이 기원전 221년에 六國을 멸하여 중국을 통일하고 수립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였다. 이 秦의 지배체제를 보면 황제를 정점으로 그리고 郡縣制度를 기반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도를 그 지배 구간으로 한 명실상부의 통일제국이었다. 황제를 정점으로 한 이 중앙집권관료제도 하에서 모든 정치와 국가권력의 原泉은 황제였다. 따라서 전영토와 백성은 황제의 一元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殷周시대와 같이 강고한 씨족조직과 전통의식으로 결속되고 또 정치 군사적 독립집단을 형성하여 독자적 활동을 전개해 온 城邑都市 내지 國家는 있을 수 없었다. 과거에 독립적 정치 군사적 집단의 형성과 독자적 활동을 가능케 해 주었던 강고한 씨족조직과 전통의식의 온상이었던 성읍도시 내지는 성읍국가는 획일적으로 전국에 실시된 郡縣制度의 강행에 의하여 살아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군현제의 강행은 근본적으로 씨족제도와 사회의 해체를 전제하였기 때문에 씨족의 토지소유와 세습은 부정되거나 살아지게 되고 또 정치군사적 집단의 형성과 활동도 존재할 수 없

95) 李春植, 〈左傳中에 보이는 事大의 意味〉《史叢》, 第14輯, pp. 35~36.

게 되었으며 또한 춘추전국시대에 야기되었던 列國간의 상호 병립 항쟁의 현상은 근본적으로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결과로 秦帝國도 황제의 一元적 지배하에 들게 되었으며 郡縣制度를 통해 전영토와 백성에 대한 황제의 個別 人身적 지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秦帝國내에서는 종래와 같이 제후에 의한 또는 열국의 군주에 의한 朝覲 入貢 등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었으며 오직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하에서 황제에 의한 직접 지배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漢代에 와서는 그 정치적 양상이 달라졌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을 새로이 통일한 한고조 劉邦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군현제도와 봉건제도를 절충한 郡國制度를 실시하였는데 이 郡國제도하에서 수많은 제후왕과 열후가 분봉 배치되었다. 이 중에서 제후왕은 방대한 영토와 인구 그리고 무력을 소유하였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관료제도에 준하는 통치조직을 구사하고 있던 거의 독립적인 정치 군사적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96)</sup> 따라서 漢의 중앙정부는 이들 제후왕국을 제어 통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지배책을 강구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朝貢제도였다. 한대의 朝貢制度는 朝覲, 入貢, 拜祭로 이루어졌는데 이 漢代 제후왕의 漢군주에 대한 朝覲 入貢과 拜祭의 儀禮도 거의 독립적 정치 군사적 집단의 首長이었던 제후왕과 漢군주와의 근본적인 관계에서 보면 漢代의 제후왕의 朝貢 拜祭의 禮도 西周시대 제후들의 周天子에 대한 朝貢之禮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漢왕실은 정치이념면에서 근본적으로 西周왕조와 달랐다. 다시 말하면 漢왕실은 이같이 거의 독립적인 정치 군사집단의 제후국을 그대로 방임하지 않았다. 「衆建諸侯政策」 「削地政策」같은 여러 정책을 구사하여 제후세력을 약화시켰고 이에 항거하여 일어난 吳楚七國亂을 분쇄하므로서 마침내 漢제국내에서 정치 군사적 독립집단을 완전히 해체하였으며 동

96) 西嶋定生, 《秦漢帝國》, 中國の歴史, 講談社, 東京, 1974, pp. 85~6.

시에 전국적으로 郡縣制度를 확대 실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군현제도의 전국적 실시에 의하여 漢제국은 명실상부한 통일제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漢의 대외관계는 秦時와는 달리 북방에는 새로운 흉노유목제국이 형성되어 정치 군사적으로 漢제국을 압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고조 劉邦은 통일의 여세를 몰아 흉노를 반격하였으나 牙城에서 대패당하고 이후 흉노의 막강한 세력을 점감한 劉邦은 每單于의 즉위에는 漢의 宗室女를 公主로 가식시켜 單于의 關氏로 출가시키고 또한 매년 막대한 재물을 봉헌하여 入貢하였는데 漢과 흉노와의 양국관계를 살펴보면 이것은 무력적 강약이 분명한 두 국가간의 차등적 관계이었다. 그러나 漢은 흉노에 비해 무력은 약하였지만 흉노에게 멸망될 弱國은 아니었으며 흉노 역시 비록 무력은 강하였지만 漢을 멸망시킬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같은 대치상태 속에서 흉노의 북변에 대한 무력침입과 약탈을 모면하기 위하여 漢은 흉노에게 入貢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漢과 흉노와의 이같은 관계는 다시 흉노의 세력이 약화되고 漢의 세력이 강하여 양국의 무력적 관계가 역전되었을 때에 양국의 정치적 관계도 역전되어 흉노가 漢에 入朝하여 복속하였다. 이와 같이 漢 흉노 양국의 정치적 복속관계가 무력적 강약의 변화에 의하여 반복되고 역전되었는데 이것을 결정지었던 것은 바로 무력적 강약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당시의 차등적 국제관계 및 질서를 결정했던 것은 무력적 강약이었으며 이 무력적 강약 위에 朝貢을 통한 차등적 국제질서가 형성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朝貢은 안으로는 강고한 씨족조직과 전통의식으로 결속되고 밖으로는 독립적 정치 군사집단을 형성한 집단사회에서 무력이 약한 집단이 보다 강한 집단에게 정치적 복속을 표시했던 儀禮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 고대에서 황제의 一元의 지배가 관철되었던 秦시대를 제외한 西周시대 春秋戰國시대

그리고 漢代에는 自治 自律의 내지는 독립적 정치 군사집단이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西周의 西周왕실과 제후, 春秋戰國시대에는 各列國의 형성, 그리고 漢代에는 漢 왕실과 제후왕 및 漢 제국과 흉노유목제국의 형성은 모두 강고한 씨족조직과 전통의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自治 自律의 내지는 독립적 정치 군사집단이 그 中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自治 自律의 내지는 독립적 정치 군사적 집단사회에서는 무력적 강약이 필연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무력적 강약에 기반한 權力構造, 君臣關係 및 國際關係가 西周시대에는 西周왕실과 제후, 春秋戰國시대에는 盟主와 盟屬의 약소국, 漢代에는 漢 왕실과 제후왕 그리고 漢 제국과 흉노유목제국의 정치적 관계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周天子에 대한 제후의 朝覲, 盟主에 대한 盟屬의 약소국의 朝貢, 그리고 漢의 흉노單于에 대한 入貢이었으며 漢과 흉노유목제국과의 무력적 강약이 역전되었을 때에는 흉노의 漢 제국에 대한 朝貢으로 변모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朝覲과 入貢은 근본적으로 살펴볼 때에 강고한 씨족조직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 자치 자율 내지는 독립적 정치 군사적 집단이 보다 무력이 강한 집단에게 정치적 복속을 표시했던 儀禮였는데 이 정치적 복속의 표시는 自國의 利害關係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대국이 약소국을 滅國 또는 郡縣化하지 못하고 朝覲과 入貢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약소국의 완강한 저항과 항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朝覲과 入貢을 통한 정치적 복속관계는 自國의 利害關係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으며 自國의 利害와 상충되고 국제관계가 自國에 불리하게 되면 수시로 단절되었으며 또 복속의 上下관계가 역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朝覲과 入貢을 통한 복속관계는 항구적이거나 일방적일 수 없었고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IV. 맺는 말

朝貢制度는 과거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장구히 실시되어 왔는데 朝貢制度에 의한 국제관계는 중국을 중심한 宗主宗屬의 차등적 국제관계였다. 또한 이 朝貢制度는 국제사회에서 장구히 시행되어 오는 동안에 정치·군사·경제·문화 등의 여러 요인의 작용에 의하여 그 운용이 다양해지고 그 성격이 변하였으며 또한 중국 및 그 주변국의 정치 군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였다.

그러나 고대 중국에 있어서 朝貢制度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고찰해 보는 한 朝貢制度의 기본적 성격을 좀더 명료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고대 東아시아에서 맨먼저 조직적 국가활동과 선진문화 활동을 전개 하였던 민족은 중국민족 뿐이었다. 중국 민족은 殷周와 같은 왕조를 건국하여 조직적인 국가활동을 전개하였고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秦漢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도를 확립하여 거대한 帝國을 운영하였다. 반면에 중국 주변의 諸異族은 오직 狩獵 遊牧 또는 半農半牧의 원시적 생활상태였으며 문화창달과 국가적 활동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이 같은 고대 동북아시아의 세계에서 朝貢制度는 西周의 封建制度속에서 기원하였다. 西周 宗法的 封建制度는 周天子를 정점으로 수많은 제후로 구성되었는데 朝貢制度는 周天子가 수 많은 제후를 제어했던 지배수단의 하나로 출발하였다. 즉 朝貢은 제후가 일정 기간에 정기적으로 周天子를 拜謁했던 것이며 朝覲시에 그 지방의 특산물을 증정했던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諸侯가 周天子에게 君臣之禮를 이행했던 臣禮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朝貢制度의 성격을 규명해 보면 西周왕조의 국가조직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제후국은 강고한 씨족조직과 전통의식으로 결속된 정치 군사적 독립집단이었으며 외부의 직접 지배를 불허했던 성읍도시 내지는 성읍국가였으

며 西周王朝은 西周왕실의 통솔과 지배아래에 결속된 이같은 성읍도시 내지는 성읍국가들로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西周왕실의 제후 지배와 통치는 씨족이 씨족을 지배하는 씨족적 지배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각 제후는 자신의 성읍국가에 대한 통치와 지배권은 확보하면서 西周왕실에 대해 朝覲 獻貢으로 그 정치적 복속을 표시하였다.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면 西周왕실의 무력적 약화와 더불어 야기된 王室制力 상실로 각 제후국은 상호 攻伐併呑의 과정을 겪으면서 주권 영토 독립국가어로 변모 발전하여 列國併立의 시대를 이루었다. 이 당시의 각국은 西周시대의 제후국과 마찬가지로 안으로는 諸侯 일가를 중심으로 강력히 결속된 大國은 지배씨족이 中核이 되어 國利에 따른 독자적인 정치운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밖으로는 수시로 자행되는 공벌병탄의 와중에서 霸權掌握을 위요하고 야기된 爭霸戰 속에서 大國은 會盟을 개최하여 약소국의 규합을 도모하고 약소국은 國命保全을 위해 會盟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대국과 약소국 간에는 상호 방위를 위한 同盟이 형성되었는데 그 상호관계는 무력적 강약의 차이에 의하여 약소국이 대국에 복속하였고 그 정치적 복속의 표시로 약소국의 군주가 대국을 방문하여 朝覲 入貢을 이행하였으며 또한 대국의 宗廟에 拜祭하였다. 그러나 相互併呑의 현상이 수시로 자행되었던 당시에 대국이 약소국의 滅國을 강행하지 못하고 정치적 복속을 표시했던 朝覲 入貢의 이행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고한 씨족조직과 전통의식으로 결속된 지배씨족의 완강한 저항과 또 당시에 상호간의 세력균형을 기반으로 한 국제정세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춘추전국시대의 각국은 상호 병립 대치하면서 무력의 강약에 따라 약소국이 大國에 대해 朝覲 入貢을 행하여 그 정치적 복속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朝貢의 기본적 성격을 살펴볼 때에 朝貢은 안으로는 강고한 씨족조직과 전통의식으로 결속된 정치 군사적 독립집단

이 무력적 강약에 의해 보다 강한 집단에 복속을 표시한 정치적 儀禮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西周시대에는 周天子와 諸侯 사이의 朝覲之禮로 나타났고 춘추전국시대에는 會盟을 통해 형성된 同盟關係에서 盟主와 盟屬의 약소국 사이에 이행된 朝覲 入貢의 관계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같은 朝貢의 기본적 성격은 秦漢시대에 더욱 분명해진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秦王朝는 황제를 정점으로 그리고 군현제도를 그 지배근간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였으므로 秦제국내에서는 정치 군사적 독립집단이 존재할 수 없었고 오직 황제에 의한 一元的 지배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정치 군사적 독립집단이 不在한 秦帝國내에서는 朝覲 入貢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漢제국의 지배체제와 국제체제는 秦代와는 상이하였다. 漢제국의 초기 지배체제는 군현제도와 봉건제도를 절충한 郡國制였는데 이것은 부분적인 봉건제도의 부활이었다. 따라서 漢제국내에서는 정치 군사적 독립집단이었던 제후국이 다시 형성되었으며 제후왕의 漢왕실에 대한 정치적 복속은 朝覲 貢獻 助祭의 부활과 이행으로 표시되었다.

또한 漢대에는 북방의 흉노가 막강하여 漢은 매년 정기적인 歲幣奉獻과 漢왕실의 공주를 흉노 單于에게 출가시켰는데 漢왕실의 흉노에 대한 매년 정기적인 歲幣奉獻은 바로 入貢이었다 이 入貢은 무력적으로 약세에 처한 약소국이 강대국에 보내는 정치적 복속의 표시였다. 그러므로 漢 흉노와의 관계는 漢이 흉노에게 복속한 臣服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漢무제에 漢과 흉노와의 무력적 강약이 역전되며 따라 흉노가 漢에 服屬하게 되고 匈奴單于의 朝覲 入貢 助祭之禮가 이행되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漢제국과 匈奴를 제외한 주변 異族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 異族중에는 漢제국과 비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치조직과 선진문화를 창달한 국가나 씨족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 異族은 漢에 獻貢을 행하고 外臣으로 포섭되어 臣服하였다.

이상으로 종합해 볼 때에 朝貢은 내부적으로 강고한 씨족조직과 전통

의식으로 계속된 독립적 정치 군사적 집단의 사회에서 무력이 약한 집단이 강한 집단에 대해 정치적 복속의 표시로 이행했던 儀禮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복속은 어디까지나 自國의 현실적 利害관계에 따라서 행해졌기 때문에 自國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수시로 단절될 수 있었다. 따라서 朝貢을 통한 복속관계는 항상 일시적이었으며 항구적일 수 없었다.